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1996.6.20>

저장소와 보안물건 사이에 흠독을 쌓은 경우의 보안거리(제30조제3항관련)

구 분	보안물건의 종류 및 보안거리			저장화약류의 수 량	
	제 2 종 보안물건	제 3 종 보안물건	제 4 종 보안물건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1 급저장소 · 2 급저장소 및 실탄저장소	340	170	140	폭약 40톤(이하)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무제한
	330	160	130	35	
	310	160	130	30	
	290	150	120	25	
	270	140	100	20	
	270	130	100	19	
	260	130	95	18	
	260	130	95	17	
	250	130	95	16	
	250	120	90	15	
	240	120	90	14	
	240	120	85	13	
	230	110	85	12	
	220	110	80	11	
	220	110	80	10	
	210	100	75	9	
	200	100	75	8	
	190	85	70	7	
	180	90	65	6	
	170	85	65	5	
	160	80	60	4	
	140	70	50	3	
	130	60	45	2	
	100	50	40	1	
	90	45	35	0.7	
	80	40	30	0.5	
	65	35	25	0.3	

꽃 불 류 저 장 소	75	35	30	화약 또는 폭약 2,000kg(이하)	
	70	35	30	1,700	
	65	35	25	1,400	
	60	30	25	1,100	
	55	30	25	900	
	50	25	20	700	
	45	20	20	500	
	40	20	20	300	